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상해

2. 보험상품의 명칭 : 나라사랑군인상해보험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보험목적 보장시 해당 개별 특약에 보험의 목적을 명기한다.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실손의료비 특약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적용계약의 경우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다. 가입연령 : 제한없음.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가. 보험료의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나.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기간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하지 않는다.
라. 보험료의 반환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보험계약대출 :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않는다.
바. 보험 종목의 변경 : 회사는 보험 종목의 변경을 승낙하지 않는다.
사.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하며, 보험만기는 8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아. 회사는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장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관련 특별약관의 면책기간은 9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만15세 미만인 경우 면책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

차.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Ⅱ)의 적용 :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Ⅱ)의 ( )특별약관이란 아래의 특별약관을 말하며 해당 특별약관을 단체보험 계약시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Ⅱ)을 의무부가한다.

특별약관 목록
<상해 관련 사망·후유장해 특약>
보통약관(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특수운동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특수운동중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직무상 선박 탑승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직무상 선박 탑승중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상해확장보상(Ⅰ) 특별약관
상해확장보상(Ⅱ) 특별약관
<상해 관련 진단 특약>
골절발생위로금 특별약관
골절발생위로금(Ⅱ) 특별약관
화상발생위로금 특별약관
외상성절단위로금 특별약관
<상해 관련 입원일당 특약>
24시간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24시간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365일 한도)

카. 질병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Ⅱ)의 적용 :

질병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Ⅱ)의 ( )특별약관이란 아래의 특별약관을 말하며 해당 특별약관을 단체보험 계약시 질병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Ⅱ)을 의무부가한다.

특별약관 목록
<질병 관련 후유장해 특약>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단체계약)
질병 50%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단체계약)
질병후유장해(80%미만)보장 특별약관(단체계약)
<질병 관련 입원일당 특약>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특별약관 목록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365일 한도)

타. 군인 영외체류 기간중 상해 위험률은 단체보험 계약에 한하여 운영한다.

파. 가입의 제한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며, 가입시 피보험자 본인은 군인으로 한다. 단, 아래의 단체계약은 제외한다.

1) 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
2) 다음의 인원만을 피보험자로 구성된 단체계약

1. 군인사법 제2조(적용범위)에서 정한 현역에 복무하는 병(兵)
2. 병역법 제2조(정의 등)에서 정한 상근예비역
3. 군인사법 제2조 2호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공군항공과학고 학생 포함)

하.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다.

거.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2)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기타
1.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너. 실손의료비 관련 사항

1) 회사는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실손의료보험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한다.
2) 실손의료비 상해/질병 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의 적용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계약 시 '실손의료비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및 '실손의료비 질병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을 기본 부가한다.

3)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한도
기본형	상해급여실손의료비 보장		5천만원 이내
	질병급여실손의료비 보장		5천만원 이내
특약형	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 보장		5천만원 이내
	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 보장		5천만원 이내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자기공명	300만원

4) 회사는 '단체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특별약관'을 적용하는 계약에 대하여 중지지급금의 지급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더. '특수운동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특수운동중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상해사망 특별약관', '특수운전중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및 '상해확장보상 특별약관(Ⅱ)'은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 해당 특별약관은 상해확장보상(Ⅰ) 특별약관과 함께 적용하지 않는다.
2) 해당 특별약관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특수운동(특수운전)을 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해당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은 계약자가 고지한 인원으로 한다.

러. 엄무외사망보험수익자지정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약은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계약에 부가한다.
(2)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업무 외 사망'과 '업무상 사망'담보를 구분하여 '업무 외 사망' 또는 '업무상 사망'만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할 수 없다.
(3)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사실 및 기업 단체보험의 근로자 사망보험금 관련 판례의 주요내용을 보험가입시 안내한다.